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8가단130500 판결 [(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홍욱

변론 종결 2021. 1. 29

판결 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 4.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D(이하 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 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16,000,000원으 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3.93%(변동금리),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원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지연배상금율: 연 12%2)D와 C은 2017. 2.경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2018. 9. 7. 기준으로 합계29,657,067원(= 원금 22,500,000원 + 이자 111,302원 + 연체이자 3,114,688원 + 대지급금3,931,077원)이 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재산처분행위

1)C은 2017. 4. 7. 피고에게, 이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6.,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C은 피고와 사이에 2017. 4. 7.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분당등기소 2017. 4. 7. 접수 제162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한편,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4. 18.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E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 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13호증,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3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채권최고액이 108,000,000원인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이 피 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4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C과 친분이 없었고, F의 소개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에 처음으로 C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4. 7.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은그 시가가 237,000,000원 상당임에도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외에는 다른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등기 등 기타 권리제한등기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2017. 4. 7. C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8. 4. 6.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그 후 피고는 2017. 11.경까지 매월 피고에게 약정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판사 황형주

별지